

**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
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
(권기만의원 대표발의)**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08. 8. 18

발 의 자 : 권기만 · 길윤옥 · 김도문
박교상 · 박세채 · 윤서규
이갑선 · 임춘구 · 정근수
(9인)

1. 제 안 이 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의회소관 「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등 7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낫표(「)표기, 띄어쓰기 및 표현법 등을 일괄 정비코자함.

2. 주 요 내 용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 등)
-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낫표(「)표기, 띄어쓰기 및 표현법 등 정비(안 제1조 등)

3. 참 고 사 항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지방공기업법」
-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

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)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, 제39조,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의4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, 제45조,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54조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령 제19조의 4”를 “령 제54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125조”를 “법 제13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36조 제1항”을 “법 제41조제1항”으로, “법 제118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제2조(구미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) 구미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를 “구미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”를 “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”로 한다.

제3조(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개정) 구미시의회행정
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”를 “구미시의회 행정사
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
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
제52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”를 “법 제113조부터
제116조까지”로, “법 제108조 및 제111조”를 “법 제117조 및 제120
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법 제137조”를 “법 제146조”로 하
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”을 “법 제104조
제2항 또는 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지방공기업법 제
79조의2”를 “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”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법 제36조제5항”을 “법 제41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4조(구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개정) 구미시
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”를 “구미시의회
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
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5조의2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
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5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영 제15조”를 “영 제33조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본문란 중 “지방자치법 제32조의2”를 “「지방자치
법」 제34조”로 한다.

제5조(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)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,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지방자치법 제5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6조(구미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의 개정) 구미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”를 “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”로 한다.

제7조(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개정)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의3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찬성자(발의자)서명 명부

(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

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)

[illegible]